

## 중국 물류관련법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Logistics-Related Laws in China

최석범(Choi, Seok-beom)\*\* · 이용근(Lee, Yong-keun)\*\*\* · 이충배(Lee, Choong-bae)\*\*\*\*

### < 목차 >

- I. 서론
- II. 중국 물류관련 정책의 추이
- III. 중국 물류관련 법제의 구성
- IV. 중국 물류관련법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 Abstract >

\*논문접수일 : 2009. 7. 30.

\*게재확정일 : 2009. 9. 4.

### < 국문초록 >

중국이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한 후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중국시장으로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물류장벽으로 인하여 중국업체들과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과 글로벌기준에 따른 법률개정은 중국 물류 전체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적인 법률개정은 중국의 물류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투자자에게 중국 물류시장으로 참가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물류산업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공포하고 도입하여 왔는데 30,000여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물류관련법은 의견에서 규정, 방법, 법률에 이르는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더욱이 중앙정부의 입법에 따라 각 성과 각시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물류관련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03-B00011). 2009년도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였음.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sbchoi@cau.ac.kr), 경영학박사.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ylee@cau.ac.kr), 경영학박사.

\*\*\*\*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cblee@cau.ac.kr), 경영학박사.

법률체계는 아주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물류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업 특히, 외국물류기업들은 중국의 이러한 법률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법률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중국에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물류관련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중국 물류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제어 : 중국, 물류, 물류관련 법제, 물류법제, 물류정책

## I. 서론

중국은 광활한 영토를 근거로 하여 엄청난 잠재력을 세계에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의 소비력도 전세계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거점과 물류거점을 중국에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물류기업들도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WTO가입 이후로 무시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더욱더 세계적으로 무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지 3년 만에 창고업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설립을 허가하여 줌으로써 물류분야에서 개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합작, 합영, 합자 등 여러 방식으로 세계일류의 물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선진화된 관리경험과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물류시장에서 외자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외자도입규범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제정하는 등 중국 정부는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기존의 법률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여 왔으며, 특히, 물류와 관련된 많은 부서에서 많은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하여 왔기 때문에 중국의 법률체계는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에서 물류관련 법률의 구성과 물류의 각 영역별 기본법규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법률체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국 물류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단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중국 물류의 현황<sup>1)</sup>과

1) 최석범·박경희(2009.3),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5집 제1호, 한국항만경제학회; 최석범(2009.6), "중국내륙 운송수단별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4권 제2호,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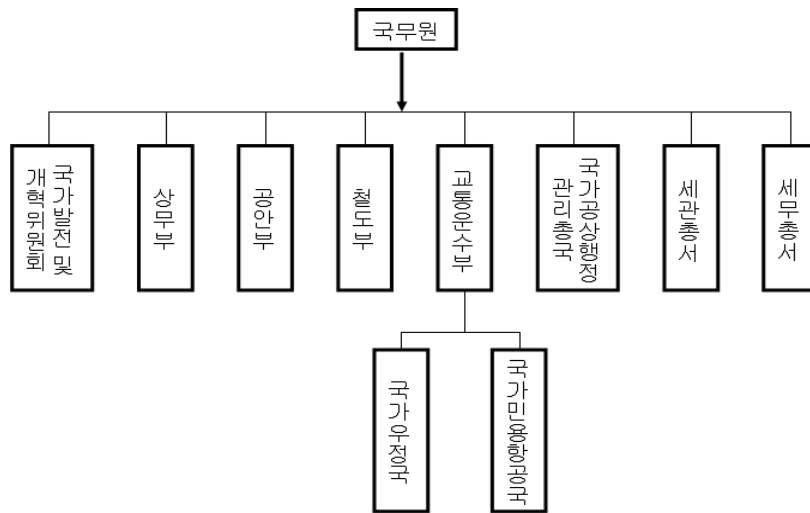
중국물류시장진출전략<sup>2)</sup>은 이미 저자에 의해 선행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물류관련 법률에 한정하고자 한다.

## II. 중국 물류관련 정책의 추이

### 1. 중국정부의 물류관련조직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물류”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불과 20년도 채 안되는데, 1992년 현 상무부의 전신인 상업부가 「상품 물류배송센터 발전건설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2001년 3월 6개 부처 공동 명의의 “현대 물류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加快我國現代物流發展的若干意見)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사슬관리(SCM), 제3자물류(3PL) 등의 선진적 물류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sup>3)</sup>

〈그림 II-1〉 물류관련 중국정부조직



국국제상학회.

2) 최석범(2009.6), “한국기업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3) 원동우·조기영(2006),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추세와 한국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연구”, 「정책연구」, 2006-13, 한국교통연구원, p.57.

물류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체계의 부문간, 업종간의 분할관리 현상이 심하고, 물류시장의 관리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 관리주체들 상호간 협조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물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선, 물류관련행정기관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중국정부는 행정기구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 중앙정부 산하 40개 부처를 29개 부처로 축소하기도 하였다. 물류와 관련해서는 2003년 4월 1일 시행된 행정기구의 재편에 따라 기존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를 폐지하고, 새로이 상무부를 신설하기도 하였으나, <그림 II-1>과 같이 여러 부처가 물류에 관련되어 있고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sup>4)</sup>

물류관련부서의 역할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특히 육운과 수운은 교통운수부가 주관하고 있고, 항공은 교통운수부산하의 국가민용항공국, 철도는 철도부에서 주관한다.

<표 II-1> 물류관련부서의 역할

물류관련부서	역 할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경제예측을 포함하여 국무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전략을 입안하고 장기경제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전략의 계획도 수립
상무부 (商務部)	2003년 4월 1일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일부가 통합되어 신설된 부서 물류배송, 전자상거래 등 유통체계, 외국기업의 투자, 국제경제기술협력 등을 관장
교통운수부 (交通運輸部)	2008년 3월에 교통부와 교통운수부로 개편되면서 국가민용항공국과 국가우정국을 소관하게 됨 육운, 수운(내항, 외항) 등의 교통정책, 인프라 정비계획, 수송기관의 개발
국가민용항공국 (國家民用航空局)	2008년 3월 중국민용항공총국에서 개편되어 교통운수부 소속이 됨 민간항공사업정책, 항공인프라정비계획, 항공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관리 등을 담당
철도부 (鐵道部)	철도와 관련한 인프라 정비의 계획 및 철도네트워크 건설, 운영관리 등을 담당
중국해관총서 (中國海關總署)	수출입관리 및 관세 등의 관리, 밀수단속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2006.3), 「중국의 물류시장」, pp.28-31등과 중국의 각 부처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함.

4) 日通總合研究所(編)(2004), 「中國物流の基礎知識」, 大成出版社, p.88.

## 2. 중국정부의 물류관련 정책의 추이와 주요정책

### 1) 중국정부의 물류관련 정책의 추이

중국정부의 물류관련 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이러한 물류관련 정책은 주로 교통부에서 발표하지만, 국무원이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하기도 한다.

<표 II-2> 중국 정부의 물류 관련 주요 정책

시간	부문	정부정책
2001	국무원	“외국인투자 도로운송업 관리규정”, “철도화물운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심사와 관리시행법” 등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내륙 운송 시장 진출 허용
2001.3	교통부 등 6개 부처	현대 물류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공동발표
2001.7	국가계획위원회	“10차 5개년 계획”기간, 교통운송 발전계획을 통해 여객운송의 고속화, 화물운송의 물류화를 장기발전 전략 목표로 제시, “2001-2020년 중국물류발전전략” 연구 시작
2002	교통부	“운송기업·종합물류 서비스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 발표
2002.4	국무원	“국가수로교통 10차 5개년 발전계획” 발표
2002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 중점 발전 산업·상품 및 기술목록”에서 물류배송센터 발전을 포함, 물류정책의 전문성 강조
2002초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물류정책의 기본 제정, 계획제정, 표준제정
2002.6	대외경제무역협작부	江蘇, 浙江, 廣東, 3개의 성과 北京, 天津, 重慶, 上海 4개의 직할시, 深圳特區를 외상투자 물류기업의 시범지역으로 지정
2002.7	국무원	중국공항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조치 발표
2003	16차 3중전회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의 문제개선에 관한 결정”에서 E-business, 물류배송 등 현대 유통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 발표
2004.1	국무원	“港口法” 제정 실시
2004.1	철도부	“중장기 철도망 계획” 제정 실시
2004.2	상무부	“외상투자 수출구매 센터 설립 관리법” 제정
2004.6	민항총국	“국내항공운송분야 정책조치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발표
2004.6	국무원	“과속과 과적차량 단속 작업의 전국적 전개에 관한 실시방안” 발표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2004년 12월부터 외국법인의 단독투자 가능, 진출지역 제한 및 점포 수 제한 철폐
2004.7	국무원	“도로운송조례” 실시, 도로운송 관련 업체에 법 근거 제공
2004.8	경제무역위원회 등 9개 부처	“중국 현대물류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중국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의 실질적 개선 촉구
2004.8	국무원	보세물류산업단지 설립확대
2004.11	국무원	차량 통행료 표준요금 인하
2004.11	국무원	전국연합 운송업계의 화물운송 송장 통일화
2004.12	국무원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환보하이 지역 연해항만건설계획” 발표

2005	교통부	“국가고속도로망계획” 발표
2005.5	교통부	첫 번째 지역교통계획으로서 “창장삼각주 현대적 도로수로교통계획 강요” 발표
2005.6	교통부	“주장삼각주 고등항로 네트워크 발전계획” 발표
2005.8	교통부	“전국 농촌도로 건설계획” 발표
2006.9	교통부	‘전국 연해지역 항만배치 계획’ 발표
2007.8	교통부	“국가도로 운송거점 배치계획” 발표
2007.1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11차 5개년 종합교통체계 발전계획” 발표
2009.2	국무원	“10대산업진흥계획” 발표(물류포함)

## 2) 중국정부의 물류관련 주요정책

### (1) 운수기업의 종합물류서비스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교통부의 의견

2001년 2월 28일에 발표된 이 의견에서 운수기업은 물류서비스의 주체 혹은 주요 제공자로서 물류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경쟁우위와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도로운수, 수로운수, 항구 하역업체들이 현대물류업무를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통운수업의 구조조정, 교통자원배치의 최적화, 교통운수의 지속발전, 교통운수업의 경쟁력 제고,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견에서는 물류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지도방침과 전체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7가지 의견 즉, 중추건설 강화와 화물처리장과 운수보관시설의 발전, 다른 기업간 연합경영 추진과 종합우위 발휘, 복합운송과 문전간 서비스 발전 추진, 제3자 물류 서비스의 개발격려, 항구의 유리한 조건 이용과 창고보관과 물류서비스 업무발전, 현대정보기술 이용과 물류서비스 수준 제고, 적정한 개방원칙 준수와 개방의 질과 수준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 (2) 중국 현대물류업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의견

2001년 3월 2일에 발표된 이 의견에서는 중국 현대물류 발전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 선진국가와의 차이가 상당히 크지만, 시장 잠재력과 발전전망이 매우 밝고 중국 현대물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류자원 배치의 최적화, 경제구조의 조정, 투자환경의 개선, 종합 국력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경제운영, 품질 및 효율의 제고, 지속발전 전략의 실현, 중국 경제체제 및 경제성장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견에서는 현대물류발전의 지도방침과 전체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7가지 의견 즉, 현대물류서비스 시장의 육성, 현대물류발전의 거시적 환경의 조성, 정보기술보급과 과학기술의 혁신과 표준화 추구, 대외개방 속도의 가속화와 해외 선진경험의 습득, 인재육성강화와 산학연의 결합 촉진, 현대물류발전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와 탐색의 심화를 제시하고 있다.

### (3) 중국 컨테이너 운수발전의 가속화 의견

2002년 4월 10일에 발표된 이 의견은 8가지 즉,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조화로운 업무체계의 건립, 컨테이너 운송정책 법규체제의 점차적인 완비, 컨테이너 운송시장질서의 규범화, 항구의 검사효율성 제고와 항구 서비스 환경개선, 컨테이너 복합운송의 연합발전 추진, 국내 무역 컨테이너운송의 신속한 발전 추진, 합리적인 컨테이너 운송기초시설의 건립, 컨테이너 운송지원 정보시스템의 건설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4) 종합정책: “현대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關於促進我國現代物流業發展的意見)

이 의견은 중국 물류산업의 기본정책을 담고 있는데, 2004년 8월 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안부, 철도부, 교통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민항총국, 공상총국 등 9개 관련 부처에 의해 제정되었다.<sup>5)</sup> 이 의견에서는 시장 환경 개선, 시행사항, 기초사업, 조직 및 협조 등 4개 부분에 대한 규범이 제정되었으며, 이 의견에 따라 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전국 현대물류 업무부처간 연석회의”(全國現代物流工作部際聯席會議)가 개최되었다.

### (5) 중국 현대물류발전계획

2004년 9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현대 물류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의 후속으로 중국 물류와 관련한 종합적 문건인 「중국 현대 물류 발전계획」(中國現代物流發展規劃)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수립되었다. 중국 최초의 국가급 물류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이 “계획”은 거의 3년간의 거둬들인 수정과 20여 회의 반복된 퇴고를 거친 후 2005년에 정식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각 관련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 간 의견조정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중국 물류 발전의 지도 방침과 발전목표, 주요 발전임무는 물론이고, 물류 발전의 중점 지역과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예정으로, 중국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3) WTO 가입후 물류관련업무 개방내용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계 자본기업의 중국진출이 증가하여, 중국 현지의 물류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요구에 중국물류기업은 제대로 대응하지

5) 전경련 중국산업연구센터(2005.10.27), “중국 물류산업의 정책방향”, 「중국산업정보」, 총48호, p.1.

못했고, 일본계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자본물류기업은 외국자본계 화주로부터의 대응을 근거로 하여 중국진출을 시작하였다.

더욱이 외국자본 제조업에 대한 중국 국내 판매의 확대와 현지조달비율이 상승하여 중국 국내물류관련업무에 대한 개방이 더 요구되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 WTO가입을 계기로 외국자본기업에 물류업무의 개방을 공약하고, 그것을 기초로 행정조직의 개편, 규제완화, 인프라정비 등을 진행시켜 왔다. 중국 교통부는 2005년 12월부터 외국회사가 독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sup>6)</sup> 그러나 개방대상 업종의 경우에도 다양한 제약이 상존함으로써 부분개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sup>7)</sup>

〈표 II-3〉 WTO가입 후 물류관련업무 개방내용

물류업무	내용
도로화물수송, 창고 화물하역	외국기업의 소수과에 의한 합자(合資)기업 등 설립가능 2002년 이내 외국기업의 대다수에 의한 기업의 설립가능 2004년 이내 외국기업 100%가 출자(出資)에 의한 기업의 설립가능
철도수송	상동
내항수운	외국무역항에 지정되어 있는 항(대외개방항 등 접안(接岸)가능)
해운(海運)대리점	외국기업의 출자(出資)율이 75% 미만의 합작기업 설립가능
통관·컨테이너창고	외국기업의 소수에 의한 합자(合資)기업 등 설립가능
수송	2001년 시점에서 3년 이상의 업무경험이 있으면 외국기업의 소수에 의한 합자(合資)기업 설립가능 2002년 이내에 외국기업의 대다수에 의한 설립이 가능, 2005년 이내에는 외국기업의 출자(出資)비율 100% 기업의 설립이 가능 최저자본금은 100만 달러, 경영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 이내 1년 이상의 영업으로 지점설립이 가능, 한 지점에 자본금 12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 또한 5년 후에는 2개소의 지점설립이 가능, 단, WTO 가입 후 2년 이내의 추가설립기한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NVOCC	보증금 80만 위안(元), 지점·영업소 1개소에 20만 위안(元)을 추가 운임의 신고

자료: 日通總合研究所(編)(2004), 「中國物流の基礎知識」, 大成出版社, p.107.

6) 김원배·신정식·권은주·김세창·양광식(2008.4), “중국 국토전략하의 환발해권 물류체계와 한·중 물류협력 전략”, 국토연구원, p.53.

7) 日通總合研究所(編), 前掲書, p.108.



### Ⅲ. 중국 물류관련 법제의 구성

#### 1. 물류관련 기본법규

중국의 물류 법규는 국가차원의 법규, 관련 행정부서차원의 법규 그리고 각 지방정부별 법규로 구분된다. 국가차원의 법규는 최상위 물류 관련 법규로서 정부의 물류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과 지침이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법규로서는 “중국 현대물류업 발전의 가속에 관한 의견(2001.3.2)”, “중국 현대물류업 발전의 추진에 관한 의견(2004.8.5)”, “국무원의 유통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상품검사법 시행조례” 등이 있다.<sup>8)</sup>

또한 관련 행정부서차원의 법규에는 관련 업종 총괄부서에서 본 업종내의 물류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와 행정정책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무부, 철도부, 교통운수부, 교통운수부 산하 국가민용항공국, 해관총서 등의 부서에서 제정한 물류 관련 법규이다. 의견과 조례, 관리방법 등이 있는데, 의견으로는 “운수기업의 종합물류서비스의 발전추진에 관한 교통부의 의견(2001.2.28)”, “항구관리를 위한 일시적인 조례”, “도로관리조례”, “항도관리조례”, “외자 국제화물운송 포워드 업체들에 대한 관리방법(상무부)”, “국제화물운송 포워드업체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문제의 통지(상무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서의 통지” 등이 있다. 특히, 물류관련 기본법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물류관련 기본법

구분	기 본 법	부처	내 용
도로	公路運輸管理暫定條例 (공표 시행일 : 1986.12.29)	교통운수부	도로화물·여객운송사업 개업 수속, 화물·여객수송 및 부대업무에 관한 규정
	中華人民共和國公路交通管理條例 (공표 시행일 : 1988.3.9)	공안국	차량·보행자에 대해 교통신호, 표식, 차량적재, 주행기준 등을 규정
	中和人民共和國公路法 (공표일 : 1997.7.3) (시행일 : 1998.1.1)	교통운수부	도로의 기획, 건설, 유지보수의 절차 및 이에 관한 행정관리를 규정
수운	中華人民共和國港口法 (공표일 : 2003.6.28)	교통운수부	항만 계획, 건설, 유지, 경영, 관리 및 이와 관련한 활동을 규정

8) 최석범 · 박경희, 전게서, p.208.

	(시행일 : 2004.1.1) 中華人民共和國國際海運條例 (공표일 : 1990.12.5) (개정일 : 2001.12.5) (시행일 : 2002.1.1) 國內水路貨物運輸規則 (공표일 : 2000.7.17) (시행일 : 2001.1.1) 港口貨物作業規則 (공표일 : 2000.7.17) (시행일 : 2001.1.1)		국제해상수송 경영활동 및 보조적 경영활동, 외자투자에 의한 동 경영활동의 출자, 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내 수역의 영업용 화물수송에 관한 상거래의 절차, 방법을 규정 항만에서의 하역, 수송, 보관, 컨테이너 취급 등의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규정
철도	中華人民共和國鐵路法 (공표일 : 1990.9.7) (시행일 : 1991.5.11)	철도부	철도 선로의 건설조건, 화물·여객수송의 영업규정, 법률책임을 규정
항공	中華人民共和國民用航空法 (공표일 : 1995.10.30) (시행일 : 1996.3.1)	국가민용항공국	민간항공기의 등록, 비행, 민간공항의 운영조건, 화물·여객의 수송규정, 안전규정, 법률책임 등을 규정
운송 주선	中華人民共和國國際貨物運輸代理業管理規定 (공표일 : 1995.6.29) (시행일 : 1995.6.29)	상무부	운송대리업의 설립조건, 업무 등을 규정

자료: 日通總合研究所(編), 前掲書, p.104의 내용과 중국물류법률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각 지방별 법규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 관련정책과 법규에 의거하여 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제정한 일련의 지역성 물류관련 법규이다. 지역성 물류 관련 법규는 중앙정부의 물류정책과 조율에 의해 지역법규, 조례, 규정, 통지, 의견 등 다양한 문서형식 외에 지방 정부에서 제정한 물류 기획방안으로도 발표된다.<sup>9)</sup>

## 2. 기능에 따른 법률구성

### 1) 물류주체에 관한 법률

물류주체의 법률제도란 물류조직의 법률 성질, 설립조건, 조직구조, 파산 등의 모든 조정과 규범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말한다.<sup>10)</sup>

9) 박병인·배종욱·김창현·신승식(2007), “중국 동북3성의 물류현황 및 시사점”,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23, No.2, 한국항만경제학회, pp.159-160.

10) 徐康平(2007), 「現代物流法導論」, 中國物資出版社, p.14.

〈표 III-2〉 물류주체에 관한 법률

구분	법률	특징
일반시장주체에 적용되는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동출자 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일반법의 범주에 속하는데 전문적으로 물류 주체적 법률에서 본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상술한 법률을 물류주체에 적용
물류주체에 대한 전문법률	〈육상 소화물 물류운송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택배업 관리규정〉, 〈국제해운 조례〉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수로운송관리 조례〉 〈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관리방법〉	특별법 규범에 속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법률법규는 특정업무의 물류주체에 관한 설립과 변경 등에서 일반법보다 한층 더 엄격한 조건으로 규정

## 2) 물류행위 법규규정

물류행위법규제도란 각종물류 시장에 진출한 조직 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종물류행위의 설립과 변경 또는 종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규범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sup>11)</sup>

〈표 III-3〉 물류행위 법규규정

구분	법률
민간 상업사무법률제도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지〉,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
구매와 소매법률제도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구매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서 매매계약과 관련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제품검사법 및 실시세칙〉
물류창고보관법제도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서 창고보관계약과 관련된 규정,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 방법〉
화물운송법률제도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서 운송과 관련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수로화물 운송규칙〉, 〈위험화물 운송규칙〉, 〈컨테이너 운송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육상법〉, 〈자동차화물 운송규칙〉, 〈컨테이너자동차 운송규칙〉, 〈중화인민공화국 민간항공법〉
물류가공과 포장법률제도	〈위험화장품 안전 관리조례〉, 〈약품포장 관리방법〉, 〈철도운송 수출 위험화물 포장용기 검역 관리방법(잠행)〉, 〈육상, 수로 위험화물에 대한 포장의 기본 요구사항과 성능 검역〉, 〈임목종의 포장과 태그 관리방법〉
물류배송, 하역 및 수송법률 제도	〈철도하역작업 안전기술 관리 규칙〉, 〈컨테이너 자동차 운송 규칙〉, 〈항구화물작업규칙〉

11) 徐康平(2007),『現代物流法導論』, 中國物資出版社, p.14.

### 3) 물류표준법률체계

현대물류의 모든 과정에서는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전송의 표준화가 요구되는데,<sup>12)</sup> 완벽한 현대물류 표준 체계가 구비되어야만, 중국의 물류시스템 간 또는 국제물류에서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 중국 물류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sup>13)</sup> 하기 위한 법률체계이다.<sup>14)</sup>

〈표 Ⅲ-4〉 물류표준법률체계

구분	법률
물류 표지 표준체계	〈상품바코드〉, 〈수송바코드〉, 〈물류단가바코드〉, 〈물류기업 분류와 평가 지표〉
물류개념 표준화	〈중화인민공화국 물류 전문용어〉(GB/T 18354-2001)
물류정보 표준화	〈물류 정보화표준 체계표〉

### 4) 물류경제 조정법률제도

물류경제 조정 법률제도는 국가가 물류경제 조정을 진행하거나 물류시장에서 미시적 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물류경제와 관계하는 법률과 법규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sup>15)</sup>

〈표 Ⅲ-5〉 물류경제 조정법률제도

구분	법률	특징
물류경제 의 거시적 조정 법률제도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역법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국가가 물류경제를 거시적인 조절과 통제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물류경제에 관계하는 법률법규
물류시장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국가가 물류시장을 미시적인 관리를

12) 朱漢民·嚴新平(2000.12), “經濟全球化与我國現代物流標準体系的构建”, 《科技進步与對策》, p.11.

13) 雷勛平(2007.10), “中國物流標準化現狀問題及對策研究”, 《中國標準化》, p.25.

14) Fen Hui(2008.11.29),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spects of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Logistics of China in the Era of E-Commerce,” *2nd Logistics International Forum & 3th e-Trade International Forum* Korea e-Trade Researcher · Northeast Asian Logistics & Distribution Institute, pp.16-17.

15) 徐康平(2007), 「現代物流法導論」, 中國物資出版社, p.15.

의 미시적 관리의 법률제도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 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품 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측정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	진행할 때 발생하는 물류경제에 관계하는 법률법규
----------------------	---	-------------------------------

## IV. 중국 물류관련법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중국 물류관련법제의 문제점

#### 1) 법률정비상의 문제점

법률의 정비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존법률의 폐지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폐지와 제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법률구성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폐지된 법률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중국에서 폐지된 법률

제정부서	법령명	주요내용	문건번호	제정일	시행일
海關總署	中華人民共和國海關加工貿易企業聯網監管辦法	해관총서제100호의 〈중화인민공화국해관에서 가공무역네트워크감독관리방 법〉은 폐지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令第150號	2003.3.19	2006.8.1
	海關總署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進出境快件監管辦法〉的決定	해관총서령104호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에서 수출 속달편 감독과 관리방법〉수정에 관한 결정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令第147號	2003.11.18	2006.5.1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工作管理規定	1994년 11월 21일에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통계제도〉 는 폐지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令第153號	1994.11.21	2006.11.1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徵稅管理辦法	1986년 9월 30일에 발표한 <해관증서관리방법> 폐지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令124號	1986.9.30	2005.3.1
交通部	中華人民共和國高速客船安全管理規則	1996년 12월 24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고속여객선 안전관리규칙>은 폐지	中華人民共和國交通部令2006年第4號	1996.12.24	2004.1.1
	港口危險貨物管理規定	<항구위험화물관리규정>은 폐지		1984	2006.6.1
國務院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實施條例	<중국수출입 상품검사법실시 규정>은 폐지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447號	1992.10.23	2005.12.1
	鐵路運輸安全保護條例	1989년 8월 15일 국무원에 서 발표한 <철로운수안전보호법>은 폐지	國務院令430號	1989.8.15	2005.4.1
商務部	出口加工區加工貿易管理暫行辦法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수출가공구가공무역관리잠시 방법에 관한 통지>는 폐지	外經貿管發第141號	2001	2006.1.1

그리고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새롭게 제정된 법률의 종류

제정부서	법령명	주요내용	문건번호	제정일	시행일
海關總署	關於對保稅物流園區貨物的統計辦法的公告	보세물류중심원구역 화물의 유통량, 유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공고	海關總署公告2005年第71號	2005.12.31	2006.10.10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條例	중화인민공화국해관통계법을 제정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第454號	2005.12.25	2006.3.1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貨物報關單修改和撤銷管理辦法	중국해관 수출입화물 세금신고서 수정 및 철수관리방법 제정	海關總署 第143號令	2005.12.8	2006.2.1
	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保稅物流園區的管理辦法	중국해관 보세물류지역 관리방법 제정	海關總署令 第134號	2005.11.1	2006.1.1

	現就辦理海關減免稅備案, 審批手續的有關事項公告	해관세금 감면 등록, 심사비준수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지	海關總署公告2005年第43号	2005.8.30	2005.10.1
交通部	中華人民共和國內河海事行政處罰規定	중국내하해양사업행정처벌에 관한 규정	交通部令2004年第13号	2004.	
	港口危險貨物管理規定	항구위험화물관리규정, 전에 발표한 모든 규정은 이에 준함	交通部令2004年第09号	2003.8.29	2004.1.1
財政部, 海關總署, 國家稅務總局	關於進口貨物進口環節海關代征稅稅收政策問題的規定	수입화물수입에 대한 해관대증세세금징수정책에 관한 규정	財關稅[2004]7号	2004.03.16	2004.1.1
國務院	收費公路管理條例	유료공로관리 법에 관한 규정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 第417号	2004.8.18	2004.11.1
	中華人民共和國道路運輸條例	중화인민공화국도로운수법	國務院令 第406号	2004.4.30	2004.7.1
國家稅務總局	國家稅務總局關於鐵路運費進項稅額抵扣問題的補充通知	철도운송비 수입세공제에 관한 추가 통지	國稅函[2005]332号	2005.	2005.4.1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扣押鐵路運輸貨物若干問題的決定	최고인민법원 철로운수 화물압수 결정		2001.5.14	2001.5.20
商務部	出口加工區加工貿易管理暫行辦法	수출가공구역에서 가공무역 관리잠시방법	商務部令[2005]第27号	2005.12.22	2006.1.1

## 2) 물류관련법제의 복잡성

중국의 물류관련법제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정한 의견이나 규정, 법률에 근거하여 각 성, 각 시에서 그에 따른 의견이나 규정, 법률을 정하는 관계로 법률, 규정 의견이 상하로 엮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법률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물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만을 살펴보았지만, 다른 여타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그 법률은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선박·선원, 항만, 해난심판·해사소송관련 법률의 종류

구분	관련법규
선박·선원	① 내하(內河)운송선박표준화관리규정(01.10), ② 국내선박관리업규정(01.7), ③ 선박(運輸船舶)강제폐기(報廢)제도(01.3), ④ 국내선박운송경영자질(資質)관리규정(01.3), ⑤ 선원교육(培訓)관리규칙(97.12), ⑥ 선박안전검사규칙(97.11), ⑦ 외항선원(海船舶員)자격시험·평가·증명발급규칙(97.11), ⑧ 최저승선인원규칙(最低安全配員規則)(97.11), ⑨ 외항(海船)선원당직규칙(97.10), ⑩ 고속여객선안전관리규칙(96.12), ⑪ 선박등기감독관리조례(96.11), ⑫ 국제항로취항선박(國際航行船舶)의중국항구입출항검사방법(95.3), ⑬ 선박등기조례(95.1), ⑭ 노후선박(老舊船舶)관리규정(93.4), ⑮ 선박·해상시설검사조례(93.2), ⑯ 내항선원(內河船舶船員)자격시험·증명발급규칙(92.4), ⑰ 선원증(海員證)관리방법(89.8), ⑱ 外國籍선박관리규칙(79.8)
항만	① 항구화물(貨物)작업규칙(00.10), ② 항구비용징수규칙(대외무역부분)에관한교통부설명(99.4), ③ 신(新)개방항구에대한항구건설비징수통지(98.6), ④ 화물항구비용(港務費)징수에관한회신(98.2), ⑤ 양자강(長江)주항로(下線)항구비징수기준에관한규정(97.2), ⑥ 수운(水運)건설공사시장(市場)관리방법(97.2), ⑦ 항구기초시설범위확정에관한통지(95.9), ⑧ 외상투자기업의항만·부두등특정항목투자경영시의세수(稅收)우대에관한통지(95.8), ⑨ 항구비용징수규칙(국내무역부분)(92.10), ⑩ 복건동산항(東山港)개방결정(91.12), ⑪ 무한(武漢)·구강(九江)·무호항(無湖港)개방결정(91.10), ⑫ 심천염전(深圳鹽田)부두개방결정(90.6), ⑬ 양포항(洋浦港)개방결정(90.5), ⑭ 청란항(淸瀾港)개방결정(90.5), ⑮ 도로전용부두(公路渡口)관리규정(90.3), ⑯ 심천마만(深圳媽灣)부두개방결정(90.2), ⑰ 항구소방감독실시방법(88.7), ⑱ 남경항(南京港)개방결정(86.1), ⑲ 항만건설비징수방법(85.10), ⑳ 양자강(長江)남통항(南通港)·장가항(張家港)개방결정(82.11)
해난심판·해사소송	① 내하(內河)교통안전관리조례(02.8), ② 해사소송특별절차법(99.12), ③ 수상(水上)안전감독행정처벌규정(98.9), ④ 선박교통관리시스템(系統)안전감독관리규칙(97.9), ⑤ 중국수역조난의국국적선박구조업무강화에관한통지(97.7), ⑥ 교통행정처벌절차규정(96.9), ⑦ 선박충돌사건재산손해배상에관한최고법원규정(95.10), ⑧ 300총톤미만선박및연해운송·작업선박해사배상책임한도액에관한결정(93.11), ⑨ 국내해상여객운송배상책임한도액규정(93.11), ⑩ 해상법(92.11), ⑪ 섬외해상인명사상(傷亡)사건손해배상에관한구체규정(92.5), ⑫ 해상교통사고조사처리조례(90.1), ⑬ 연해항구도시의해사법원설립에관한결정(84.11), ⑭ 해상교통안전법(83.9)

자료: 정영석(2005.3), "중국의 해양수산 관련 법률체계-해운·항만관련법-", 「해사법」, 제17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pp.306-311.

### 3) 물류기능별 법률상의 문제점

#### (1) 중국의 물류주체에 관한 법률제도상의 문제점

우선, 중국의 물류주체에 관련된 법률제도 중에서 대부분이 국무원의 각 부문위원회를 통



하여 제정되고 발표되고 있는데, 그 형식이 “조례”, “방법”, “통지” 등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차원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서 효력이 강력하지 않다는 점이다.<sup>16)</sup>

둘째, 운송대리업과 관련된 중국의 법률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 투자자가 연락지점, 대리점 등의 형식으로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규정이나 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관리방법에 의하면 이러한 대리점은 중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연락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운송증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수증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관리방법에서는 국제화물운송대리의 성격, 지위 및 책임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sup>17)</sup>

### (2) 중국의 물류활동에 관한 법률제도상의 문제점

현대물류활동은 운송, 창고보관, 포장, 배송, 운반, 유통 가공 및 정보관리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각 부문도 각각 관련된 법률에 의해 규범되고 제약을 받으므로 물류활동과 관련된 제도의 법률범위가 무역, 운송, 창고보관 등 여러 영역에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물류 법률규범은 내용과 업종관리 상에서 해륙공운송 계약 및 서로 다른 정부행정부문이 각각의 업종 특징에 따라 제정하는 관련된 규정과 관리 방법에서 분산되고 있다. 각 부문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적용되어 대상이 중복되고 표준 또한 통일되지 않아 법규와 규칙을 제정하여 중국 물류 법률제도들을 원활하게 연결시키지 못하여 물류 법률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하였다. 각 지방정부 또한 본 행정 지역 이익의 요구에 근거하여 지방 보호를 기초로 하는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하였다.

### (3) 물류표준법률체계상의 문제점

중국 물류산업의 표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물류산업은 전통적인 물류블록관리체제의 영향을 받으며, 물류산업의 표준은 각기 자신들의 산업이 분산되어 각자 자신들만의 산업 내부 표준을 형성하였다. 한일 표준을 채택하거나 유럽과 미국 표준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표준은 자신들의 각 부문과 각 산업의 이익을 구현하고 있다.<sup>18)</sup> 모두 통일과 조화시켜 물류표준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각자의 주장에 따라 활동

16) Fen Hui(2008.11),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spects of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Logistics of China in the Era of E-Commerce," *E-Trade Review*, Vol.3, No.2, p.218.

17) 해양수산부(2006.12), "한·중·일 물류협력방안연구(1차년도)-한·중간 물류협력 및 중국 법·제도분석-", pp.165-166.

18) Fen Hui, op.cit., pp.221-222.

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조화될 수가 없는 표준적 집합체가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 해상과 철도운송에서 컨테이너 표준이 다른 상태에서 해상과 철도운송을 같이 연결하여 진행한다면 컨테이너를 다시 분리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중국의 종합 운송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가도 상승하여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중국물류포장표준과 물류설비표준 간에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운송기구의 적재율과 창고보관시설의 공간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sup>19)</sup> 또한, 중국의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자신들의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숫자, 길이, 유형 및 격식은 모두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많은 정보 전송에 불가능이 초래되고, 자원의 공유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물류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20)</sup>

(4) 물류경제 조정법률제도상의 문제점

중국의 물류관련 조정법률법규는 관련정부기구에 따라 비교적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된 규정은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법률간의 체계적인 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진공지대(眞空地帶)”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5) 복합운송관련법의 부재

중국에는 복합운송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복합운송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종 법규에서 복합운송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sup>21)</sup> 산재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해상법에서는 제4장 제8절에서 복합운송과 관련된 내용을 5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컨테이너복합운송규정이 존재하며, 총8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계약법 제17장 제4절은 복합운송에 대한 계약을 내용으로 하며, 5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IV-4〉 복합운송관련 법규

법령	관련 규정
중국해상법	복합운송관련 규정(제4장 8절 제102조-제106조)
국제컨테이너복합운송규칙	컨테이너관련 국제복합운송의 정의, 복합운송인의 책임 등을 다루고 있는 규정(제1조-제43조)
중국 계약법	복합운송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제317조-321조)

19) 劉春梅(2007), “完善現代物流標準化体系的建議”, 『哈爾濱商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總第95期, p.71.

20) 朱漢民·嚴新平(2002.12), “經濟全球化与我國現代物流標準体系的构建”, 『科技進步与對策』, p.11.

21) 고재중(2006.11), “중국의 복합운송법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2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p.72.

### (6) 종합물류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정비

중국에서는 제3자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화주에 대한 체계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3자 물류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종합물류서비스가 각 개별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어 물류기업에 있어서도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2. 중국 물류관련법제의 해결방안

### 1) 법률정비의 효율화 도모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법률로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고, 각 성이나 각 시에서 입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에 반드시 일치하는 내용으로 입법화하는 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 2) 물류관련법제의 단순화 도모

중국의 물류관련법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물류관련법률들을 대폭적으로 정비하여 법률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각성과 각시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물류기능별 법률상의 해결방안

#### (1) 물류주체에 관한 법률상의 해결방안

첫째, 국무원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조례, 방법, 통지 등의 효력이 낮은 법률보다는 물류주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로 제정하여 관련 조례, 방법, 통지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법률구조로 달성하여야 한다.

둘째, 운송대리업과 관련하여 국제화물운송대리의 성격, 지위 및 책임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관리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물류활동에 관한 법률제도상의 해결방안

현대물류활동을 각 가능별로 규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물류의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물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합목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고, 물류관련기능을 국무원이나 교통부로 통합하여 법률정비와 관리기능의 일원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법률제정도 중앙정부의 법률에 일치하는 규정이나 방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물류표준법률체계상 해결방안

각 운송기능별 표준화 노력을 국가물류표준화 활동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관련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물류표준화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물류경제조정법률상의 해결방안

물류경제 조정법률들은 기존의 체제에 맞추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 물류사정에 맞게 현대화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체제, 관리체제, 시장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전통물류와 현대물류가 크게 변화되었는데, 전통물류에 근거하여 규정된 물류경제조정법률들을 현대물류의 사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복합운송관련법제의 제정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복합운송관련 규정들을 복합운송법으로 통합하여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제규칙을 반영하여 복합운송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6) 종합물류업법의 제정

제3자 물류서비스를 비롯한 물류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3자 물류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제3자물류서비스업자의 체계적인 인증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물류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중국의 물류관련법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물류산업에 비하여 그 정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단적으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물류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류관련법률들은 비록 최근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내용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의 환경이나 제도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물류발전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그 적용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법률체계 차원에서 법률적 구조가 너무 복잡한 것을 제외하고도 물류의 실행과 이행차원에서 구체적인 지도와 조정역할이 부족하고 거시적인 통제력과 미시적인 구속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의 물류관련법제의 제정과 정비차원에서도 해상, 육상, 항공, 철도 등의 운송수단 그리고 소비자보호, 기업관리, 계약관리 등이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제정되고 정비되는 관계로 물류와 관련된 법률과 그 관리가 분산되어 있어 물류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물류관련법률의 입법상 교통, 철도, 항공, 항업, 대외무역 등의 관련부서가 관계되는데, 이러한 부서간의 이해조정이 부족하고, 각 기능간의 조화가 곤란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물류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고 글로벌 경제에 입각한 물류법률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물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류산업의 발전적 특징을 고려하여 물류법규를 집대성하여 물류관련법률의 체계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종합적인 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제화 수준에 알맞게 물류관련 기술표준법제를 제정하여 중국물류표준화 작업을 국가의 주도로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책과 이행강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고재중(2006.11), “중국의 복합운송법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24집,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김원배·신정식·권은주·김세창·양광식(2008.4.), “중국 국토전략하의 환발해권 물류체계와 한·중 물류협력 전략”, 『국토연구원』.
- 박병인·배종욱·김창현·신승식(2007), “중국 동북3성의 물류현황 및 시사점”,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23, No.2, 한국항만경제학회.
- 원동우·조기영(2006),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추세와 한국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연구”, 『정책연구』, 2006-13, 한국교통연구원.
- 전경련 중국산업연구센터(2005.10.27), “중국 물류산업의 정책방향”, 『중국산업정보』, 총48호.
- 정영석(2005.3), “중국의 해양수산 관련 법률체계-해운·항만관련법-”, 『해사법』, 제17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 최석범·박경희(2009.3),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5집 제1호, 한국항만경제학회.
- 최석범(2009.6), “중국내륙 운송수단별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4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 최석범(2009.6), “한국기업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2006.3), 『중국의 물류시장』.
- 해양수산부(2006.12), “한·중·일 물류협력방안연구(1차년도)-한·중간 물류협력 및 중국 법·제도 분석-”.

### 〈국외문헌〉

- 雷勛平(2007.10), “中國物流標準化現狀問題及對策研究”, 『中國標準化』.
- 徐康平(2007), 『現代物流法導論』, 中國物資出版社.
- 日通總合研究所(編)(2004), 『中國物流の基礎知識』, 大成出版社.
- 朱漢民·嚴新平(2002.12), “經濟全球化與我國現代物流標準體系的構建”, 『科技進步與對策』.
- 劉春梅(2007), “完善現代物流標準化體系的建議”, 『哈爾濱商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總第95期.
- Hui, Fen(2008.11.29),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spects of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Logistics of China in the Era of E-Commerce,” *2nd Logistics International Forum & 3th e-Trade International Forum* Korea e-Trade Researcher · Northeast Asian Logistics & Distribution Institute.
- Hui, Fen(2008.11),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spects of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Logistics of China in the Era of E-Commerce,” *E-Trade Review*, Vol.3, No.2.

## 〈 Abstract 〉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Logistics-Related Laws in China

Choi, Seok-beom\* · Lee, Yong-keun\*\* ·  
Lee, Choong-bae\*\*\*

After China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December 2001, the Global Logistics Companies have taken part in China's market and are still increasingly embroiled in disputes with Chinese companies due to logistics barrier. But China's entry into the WTO and its legal reforms in accordance with global standards have a important impact on the entire system of China's logistics. Continual legal reforms enhance logistics transparency in China and stimulate the foreign investor to participate in China's logistics market.

China promulgated and implemented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ogistics industry has more than 30,000 pieces. It is undeniable that these laws and regulations to promote the field of logistics played an important positive role in China's logistics. China's logistics market is not standardized, not the legal system of the logistics market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hina's logistics-related legal systems by fin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logistics-related Laws in China.

Key words: China, Logistics, Logistics-Related Law, Logistic Law, Logistics Policy

\*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First Author

\*\*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Co-Author

\*\*\*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Co-Author